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10호
- 나. 발 의 자 : 우창윤 의원 외 1명
- 다. 발의일자 : 2015년 11월 25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30일

2. 제안이유

- 『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
- 다. 서울시장이 자격을 갖춘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
- 라. 서울시장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
- 마. 『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)
- 바. 서울시장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평생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이 조례안은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내용은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(안 제6조, 제7조)하고, 평생교육기관 운영(안 제8조)과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업무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에 대해 규정하며,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12조) 등의 사항을 규정함.
- 본 제정안은 총 1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<제정안의 조문 배열>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정의)
- 제3조(시장의 책무)
- 제4조(시민의 책무)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제2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
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
-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)

제3장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

- 제8조(평생교육기관의 운영)
- 제9조(평생교육센터 지정)
- 제10조(평생교육센터 지원)

제11조(평생교육센터의 업무)
제1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제13조(지도감독)
제4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
제14조(지원센터 설치)
제15조(지원센터 지원)
제16조(지원센터 업무위탁)
제17조(시행규칙)
부 칙

나.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

- 이 조례안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, 관련법의 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.
- 특히 성인이 된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 관련 지원이 부족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 등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.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 및 평생교육의 요구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음. 2015년 이미 2개 자치구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,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.

다.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

1) 정의(안 제2조 관련)

- 조례안 제2조의 규정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거나 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”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,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조례에서 필요한 정의 규정만 명시하는 것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2) 평생교육기관(안 제8조 관련)

- 조례안 제8조에서 시장은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교육감에 대하여 시장이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별도로 “조치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와 관련된 근거는 없음. 따라서 본 조항은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적극 “지원”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3) 평생교육센터(안 제9조 ~ 제13조 관련)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¹⁾에 따르면,

1) 제26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「평생교육법」²⁾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 제9조의 “평생교육센터”는 상기 평생교육기관 중 시장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 서울시에서는 현재 2개 센터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.

-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하는 것은,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. 또한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조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의 장이 매년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시장과 교육감은 독립된 기관이며, 평생교육기관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이 승

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) **평생교육법 제2조(정의)** 2. “평생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가. 이 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
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
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
이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.

- 다만,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의 주체인 교육감이나 자치구청장을 거쳐 사업 계획 등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다. 기타 의견

- 별도로 발의된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과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, 취지는 같은 바, 위 조례안과의 중복 규정을 통합·조정할 필요가 있음.